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원 양 산 업 발 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세부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16조의2)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마다 작성하는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안 제16조의3)

안전관리지침의 수립·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 방법,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안 제20조의2 · 제20조의3 · 제20조의4 · 제20조의5 · 제20조의6)

불법 · 비보고 · 비규제어업을 한 원양어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 · 납부 · 징수하는 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라. 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제1항 위반 시)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제1항 위반 시) 각각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으로 과태료의 개별 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30. ~ 8.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법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제4장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나 재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이의신청) ① 제20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

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중전의 별표)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28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 항6호	150	200	300
마. 법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 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 항7호	150	200	300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법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u>
<u><신 설></u>	<u>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은 별표 3과 같다.</u>
제19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제19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③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u>
	<u>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31조2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u>
<u><신 설></u>	<u>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u>

<신 설>

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이의신청) ① 제20조의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신 설>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

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신 설>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	법 제36조제1	250	300	350

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항제1호			
나.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250	
다.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250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00	
라. 법 제28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6호	150	200	300
마. 법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7호	150	200	300

안전관리지침의 내용 (제16조의2 관련)

구 분	내 용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가. 선박의 안전 운항과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정해야 하는 사항 나. 선박 운항과 작업 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치 방안 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원양어업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방안 1)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원은 안전관리지침을 읽고 이해할 것 2) 안전관리지침을 모든 선원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게시 할 것 3) 안전관리지침 내용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침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정할 것 라. 그 외 원양어업자가 정하는 사항
2.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지침과 관련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원의 직무별 책임과 권한 및 상호관계 규정 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침을 마련하고 선박별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다. 안전관리지침과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선원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 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선박의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1)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선원 승선 2)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적절한 선원의 승선 마. 그 외 원양어업자가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1) 각 선박의 안전관리 활동의 지원 및 감독 2) 사고 등 위험 상황 시 효과적인 관리 3) 안전관리지침의 이행 점검 및 조치 나. 안전관리를 위해 육상직원 및 선원에 법령·규칙·규약 및 지침을 적절히 교육·훈련할 것 다. 그 외 원양어업자가 정하는 사항
	선장의 안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가. 다음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를 위한 선장의 업무범위 1) 안전관리지침 숙지 및 시행 2)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기 위한 동기부여 3) 명확한 지시체계 4)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여부 확인 5) 안전관리지침을 검토하고 지침에 맞지 않는 경우 시정 필요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1)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조치 2) 필요시 원양어업자에 지원 요청 다. 그 외 선원법 제6조부터 제21조에서 정하는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라. 그 외 원양어업자가 정하는 사항
3. 선박운용에 관한사항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가. 관련 법령 및 자체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선박이 정비·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 1) 주기적인 검사 2) 1)의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원인을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3) 1) 및 2)의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나. 기관 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선박 정비 절차 수립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선박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사항 포함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지침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 수립 1)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할 것 2)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검토·승인할 것 3)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4)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에 관한 서류와 증서를 정하여 사무실에 비치할 것 5) 선장은 선박 서류 및 증서의 원본을 선박에 모아서 비치할 것 6) 선원 중 선장이 정하는 자는 선박의 제반 문서를 작성하고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인명구조, 충돌, 좌초, 화재, 침수, 퇴선, 타기 고장, 해양오염사고, 기관 고장사고 등 잠재적인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 수립 나. 가목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다. 가목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를 초기 대응 조치, 비상배치 후 조치, 후속 조치로 구분한 대응절차
5. 안전관리지침 개선을 위한 사항	가. 안전관리지침 중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종류와 개선 절차 나. 사고 및 위험발생 시 조사·분석하는 절차 수립 다. 나목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 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의3 관련)

구분		기 준
자격기준	경력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원양어선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선박 안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교육기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지침 수립·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상직원 및 선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3. 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교육 등 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항
인원		1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경력기준 및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위 표의 근무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위 표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원양어업자가 보유한 선박이 1척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의2제4항 관련)

1.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1조의2 각 항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수산물 가액 수준에 따라 과징금액이 결정되며, 위반행위의 기간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시 부과 배수를 곱하여 최종 산정한다.

- 가. 수산물 가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며 이는 법 제31조의2제1항 본문의 “도매가격” 으로 한다. “도매가격” 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수산물의 도매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수산물의 도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수입 신고된 금액을 도매가격으로 볼 수 있다.
- 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징금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기간에 대한 부과배수는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라.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제2항 세부기준에 따라 정해진 과징금에 다음 각 목의 배수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1)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 1.6배
 -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 1.6배
- 마.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바.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 부과권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세부산정기준

가.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2억원부터 수산물 가액의 2배까지 과징금액을 부과한다. 위반 일수에 따른 부과 배수는 최대 2.4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 정도 (수산물 가액)	과징금 금액
수산물 가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수산물 가액의 2.0배
수산물 가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인 경우	수산물 가액의 1.5배
수산물 가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인 경우	수산물 가액의 1.2배
수산물 가액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인 경우	수산물 가액의 1.0배
수산물 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수산물 가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2억원

나.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1억원부터 수산물 가액의 2배까지 과징금액을 부과한다. 위반 일수에 따른 부과 배수는 최대 1.4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 정도 (수산물 가액)	과징금 금액
수산물 가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수산물 가액의 2.0배
수산물 가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인 경우	수산물 가액의 1.5배
수산물 가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인 경우	수산물 가액의 1.2배
수산물 가액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인 경우	수산물 가액의 1.1배
수산물 가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인 경우	수산물 가액의 1.0배
수산물 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수산물 가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억원

다. 제31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2천만원부터 수산물 가액의 1배까지 과징금액을 부과한다. 위반 일수에 따른 부과 배수는 최대 1.4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 정도 (수산물 가액)	과징금 금액
수산물 가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수산물 가액의 1.0배
수산물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수산물 가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2천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원양산업과	
연 락 처	(044) 200-5366